



한국응용언어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7. 11. 2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응용언어학회 윤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응용언어학회 회칙 18조에 의거하여 학회내에 둔다.

제2장 구성

제1조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편집출판 부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임기는 부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3장 기능

제1조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이 있을 경우 이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임무와 권한이 있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 적절한 징계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윤리규정

제1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자신 혹은 타인의 연구 내용 및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제시하는 경우 표절로 간주하여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부의한다.

제2조 타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거나 기 게재된 논문을 중복 투고 및 게재하거나, “응용언어학”에 게재된 논문을 학회의 동의 없이 타 학술지에 무단 중복 게재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부의한다. 미출간된 학위논문의 게재는 허용하되,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출판된 학위논문의 경우는 중복게재를 불허한다.

제3조 “응용언어학”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곳에 중복 게재나 출판을 하고자 할 경우 학회의 사전 동의를 얻었음을 밝혀야 하며, 해당 논문이 게재되었던 “응용언어학”의 권, 호 및 쪽수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되어 통보될 때까지

저자의 이름과 소속 및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심사를 의뢰한 논문을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학회에서 정한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평가한 후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제5장 윤리규정 시행 세칙

제1조 윤리 위원회는 표절, 중복 투고 및 중복 게재 등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이 있을 경우,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자료,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의 소명 내용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조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회원에게 징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3조 윤리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심의가 완결되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제보자 및 위반 당사자인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5조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밝혀질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논문 투고를 불허한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별도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공개 사과, 회원자격 상실 등의 추가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위반 사항의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제7조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한국응용언어학회 회원은 별도의 서약 절차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응용언어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본 윤리규정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하도록 한다.